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증원하였던 한시정원 4명(5급 2명, 6급 2명)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3. 9. 00,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9. 00. ~ 9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4항을 삭제한다.

별표 11 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9조(한시정원) ① ~ ③ 삭제 ④ 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9월 1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. ⑤·⑥ 삭제 ⑦ ~ ⑨ (생략)	제39조(한시정원) ＜삭제＞ ⑦ ~ ⑨ (현행과 같음)